

울산광역시북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공	기 관 의 장
람	



제 724 호 2011. 12. 13(화)

공 고

○울산광역시북구공고 제 2011-764호[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 2

회								
람								

발행: 울산광역시북구 편집: 기획홍보실(☎ 219-7207 행정 7207)

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11-764호

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」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리고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12월 13일

울산광역시북구청장

1. 개정이유

「정보화촉진 기본법」이 「국가-정보화 기본법」으로 전부 개정되고,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보화 관련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법 개정취지를 반영하고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근거법령을 마련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 명을 “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”에서 “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정보화 조례”로 변경함
- 나. 정보화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변경함(안 제6조)
- 다. 정보화책임관을 정보화 부서의 장으로 지정함(안 제8조)
- 라. 분야별 정보화 추진 및 민간투자 유치, 지역정보통합센터의 설립에 대한 사항 등을 신설함(안 제9조, 제10조, 제11조)
- 마. 민원사항의 선지적 처리, 지식정보지원, 정보화 자료의 제공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2조, 제13조, 제14조)
- 바. 정보문화의 창달,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16조, 제17조, 제18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2. 1. 2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(참조 총무과장, 전화 219-7245, 팩스 219-7309)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4. 기타

진부개정 조례안의 진본은 인터넷 홈페이지(www.bukgu.ulsan.kr)에 차부불로 올 놓겠습니다. 직접 방문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.